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확인심사의 실시요건을 완화하고, 심사에 있어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현지확인심사 실시요건 완화(안 제6조의3)

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

나. 이의제기 기간 연장(안 제6조의4)

이의제기 기간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각각 현행 25일에서 90일,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자 함

다. 선택진료비 조항 삭제(안 제7조)

「의료법」 제46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선택진료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예고(2020. 8. 7 ~ 2020. 9. 15)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6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의4제1항 중 “25일”을 “90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0일”을 “60일”로 한다.

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의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이의제기를 받아 이 규칙 시행 후에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리는 경우에는 제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조의3(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·지급) ① (생략)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2에 따라 청구받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해당 의료기관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. ③·④ (생략)	제6조의3(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·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등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의4(이의제기 등) 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.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	제6조의4(이의제기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90일 ----- -----. ② ----- -----

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. ③ (생략)	----- 60일 ----- ----- -----.
제7조(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 법 제15조제2항에서 “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1. ~ 4. (생략) 5.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산정·지급하는 「의료법」 제46조제5항에 따른 추가비용에 관한 사항	제7조(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